|  |  |  |
| --- | --- | --- |
|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  신문출판총서 령 제51호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을 2011년 3월 17일의 신문출판총서 제1차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柳斌傑  2011년 3월 25일  **제1조** 국내 단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인의 수입출판물 구독수요를 만족시키고 수입출판물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해, 《출판 관리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구독자가 수입출판물을 주문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수입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수입한, 외국 및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서 출판한 도서, 신문(낡은 신문 포함), 정기간행물(낡은 간행물 포함),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라 함은 《출판 관리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판물의 수입에 종사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구독자라 함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를 통해 수입출판물을 주문하는 국내 단체와 개인,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공부, 생활하는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주문이라 함은 구독자가 본 단체나 개인의 구독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로부터 수입출판물을 구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수입 출판물은 발행범위 제한과 발행범위 무제한 2가지로 나누며, 국가는 그 발행에 대한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구독자의 주문에 따라 분류별 공급하는 발행방식을 취하며,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은 구독자의 자율적 주문과 시장 판매를 결부시키는 발행방식을 취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도서, 전자출판물 등은 시장판매 발행방식을 취한다.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종류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확정한다.  **제4조** 구독자가 주문하는 수입출판물은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경영한다. 그중, 구독자가 주문하는,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수입 업무는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경영해야 한다.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구독자가 주문하는 수입출판물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가 비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 위탁하여 수입출판물을 대리 주문받거나 대리 배송 시에는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국내의 단체 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을 주문하는 경우 단체 주문신청서를 지참하고 직접 신문출판총서에서 승인한 신문, 정기간행물 수입경영단위에 가서 주문수속을 할 수 있다. 국내의 개인 주문자는 소재단체를 통해 주문수속을 할 수 있다.  **제6조**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을 주문할 수 있는 국내 단체주문자는 신문출판총서에서 확정한다.  **제7조** 국내 단체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주문하는 경우 중앙기관 주문자는 소속 중앙 각 부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 단체주문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지갈시 신문출판 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동급 중공 당위원회 선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주문자는 단체 주문신청서와 관련 승인문건을 지참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주문 수속을 할 수 있다.  국내 단체주문자가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주문할 시에는 상응하는 사용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8조** 주중 외국기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공부, 생활하는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인이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을 주문 시에는 단체 주문신청서 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신문출판총서가 승인하거나 지정한 신문, 정기간행물 수입경영단위에서 주문 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발행범위를 제한하는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 주문자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후의 주문명단, 주문할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품종과 수량을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판물 수입경영단위는 승인을 얻은 구독자 명단과 수입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 전자출판물의 품종과 수량에 따라 구독자에게 공급한다.  **제10조**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제멋대로 수입 출판물의 주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출판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처벌한다.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사정이 심각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11조** 이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가 2004년 12월 31일에 반포한 《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주문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  新闻出版总署令第51号  　　《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已经2011年3月17日新闻出版总署第1次署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新闻出版总署署长 柳斌杰  二〇一一年三月二十五日  **第一条** 为了满足国内单位和个人、在华外国机构、外商投资企业外籍人士和港、澳、台人士对进口出版物的阅读需求，加强对进口出版物的管理，根据《出版管理条例》和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国境内订户订购进口出版物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进口出版物，是指由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的，在外国以及在中国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出版的图书、报纸（含过期报纸）、期刊（含过期期刊）、电子出版物等。  　　本办法所称出版物进口经营单位，是指依照《出版管理条例》设立的从事出版物进口业务的单位。  　　本办法所称订户，是指通过出版物进口经营单位订购进口出版物的国内单位和个人、在华外国机构、外商投资企业和在华长期工作、学习、生活的外籍人士以及港、澳、台人士。  　　本办法所称订购，是指订户为满足本单位或者本人的阅读需求，向出版物进口经营单位预订购买进口出版物。  **第三条** 进口出版物分为限定发行范围的和非限定发行范围的两类，国家对其发行实行分类管理。  　　进口限定发行范围的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等实行订户订购、分类供应的发行方式；非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实行自愿订户订购和市场销售相结合的发行方式；非限定发行范围的进口图书、电子出版物等实行市场销售的发行方式。  　　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的种类由新闻出版总署确定。  **第四条** 订户订购进口出版物由出版物进口经营单位经营。其中，订户订购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的业务，须由新闻出版总署指定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经营。  　　未经新闻出版总署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订户订购进口出版物的经营活动。  　　出版物进口经营单位委托非出版物进口经营单位代理征订或者代理配送进口出版物，须事先报新闻出版总署同意。  **第五条** 国内单位订户订购非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持单位订购申请书，直接到新闻出版总署批准的报纸、期刊进口经营单位办理订购手续。国内个人订户应通过所在单位办理订购手续。  **第六条** 可以订购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和电子出版物的国内单位订户由新闻出版总署确定。  **第七条** 国内单位订户订购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等，中央单位订户由所属中央各部委审批；地方单位订户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新闻出版行政部门审核后报送同级党委宣传部审批。获得批准的订户持单位订购申请书和有关批准文件,到新闻出版总署指定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办理订购手续。  　　国内单位订户订购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等，应制定相应的使用管理办法。  **第八条** 在华外国机构、外商投资企业和在华长期工作、学习、生活的外籍人士和港、澳、台人士订购进口报纸、期刊，应持单位订购申请书或者本人身份证明，到新闻出版总署批准或者指定的报纸、期刊进口经营单位办理订购手续。  **第九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负责对订购限定发行范围的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的订户进行审核，并将审核后的订户名单、拟订购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的品种和数量报送新闻出版总署批准。出版物进口经营单位依照批准后的订户名单及进口报纸、期刊、图书、电子出版物的品种和数量供应订户。  **第十条** 未经批准，擅自从事进口出版物的订户订购业务，按照《出版管理条例》第六十一条处罚。  　　违反本办法其他规定的，由新闻出版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并处3万元以下的罚款。  **第十一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新闻出版总署2004年12月31日颁布的《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同时废止。 |